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32

제출년월일 : 2024년 2월 5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창의행정의 새로운 정의와 공무원 제안 활성화를 위해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여 전부개정

나.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활동을 장려하여, 아이디어 제안체계의 근간을 활성화하고 창의행정 구현의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서울특별시·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업무혁신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창의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정의(안 제2조)

○ (창의행정) 적극적인 시도와 새로운 시각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모든 활동

○ (학습활동) 공무원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공통의 관심사나 문제에 대한 지식을 창출·공유하고 직무에 적용함으로써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활동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 적용

라. 제안의 제출과 접수(안 제4조)

○ (제출) 연중 수시 제출, 유사한 제안의 경우 먼저 접수한 제안 우선

○ (기여도) 제안 공동 제출시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 제안자로 결정

마. 창의행정상 선정과 시상(안 제5조)

○ 창의적인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공무원에 창의행정상 시상

○ 선정절차·시상분야·선정인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결정

바. 의견 조회(안 제6조)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 등에 따라 출원 또는 등록되었거나 권리를 취득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부상 및 우수제안 추천(안 제7조, 제9조)

○ (부상)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수여

○ (우수제안) 우수한 채택제안을 중앙우수제안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 추천 가능

아. 실비 보상(안 제8조)

○ 전시 등을 위해 시제품을 제작시 소요된 비용을 보상할 수 있음

자. 제안의 관리 및 실시성과 평가(안 제10조~12조)

○ 분야별·수준별 제안목록을 작성·관리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택제안 실시성과를 업무 등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차. 제안 활성화 노력(안 제13조)

○ 공무원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안내·협조

카. 학습활동 지원(안 제14조)

○ 공무원의 학습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사항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3. 11. 9. ~ 11. 29.)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권빛나 (☎2133-7767)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업무혁신 사례 발굴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행정”이란 적극적인 시도와 새로운 시각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행정 내부 업무혁신을 추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제안”이란 공무원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서울특별시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바. 서울특별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4.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실행하기로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5. “학습활동”이란 공무원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공통의 관심사나 문제에 대한 지식을 창출·공유하고 직무에 적용함으로써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과 접수) ① 공무원은 제안을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제안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고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표시하되,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 1명을 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제5조(창의행정상 시상 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창의적인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출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창의행정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창의행정상의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창의성
2. 실현가능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② 시장은 창의행정상 시상 대상자 선정 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③ 창의행정상의 시상분야, 선정인원, 선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견조회)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관계기관,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등에 따라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되었거나 권리를 취득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7조(부상 등) ① 시장은 창의행정상 수상자에게 상장 및 포상금 등의 부상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장 및 부상 수여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③ 시상 후 타인의 공적사항 등을 제출하는 등 거짓의 방법으로 수상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시장은 시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포상금 등을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비보상) 시장은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실비를 보상할 수 있

다.

제9조(우수제안 추천) 시장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중앙우수제안 대상으로 결정하여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의 관리) 시장은 공무원의 제안에 대하여 분야별·수준별로 목록을 작성·관리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도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자 등의 참여) 시장은 채택제안이 업무담당 기관에서 실행될 경우 그 과정에 제안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의 평가)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성과를 업무 등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제안의 활성화 노력) 시장은 공무원이 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학습활동의 지원) 시장은 공무원의 학습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창의상(상장 및 포상금 등의 부상과 인사상 특전을 포함한다)을 수상한 공무원은 이 조례 제5조에서 제9조까지에 따른 창의행정상을 수상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창의상이 창의행정상으로 개편됨에 따라 포상금 및 홍보비용·부서 지원비용 등 필요
- 학습활동 지원 근거 규정 신설로 운영비용 소요

> 제5조(창의행정상 시상 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창의적인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출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창의행정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 제7조(부상 등) ① 시장은 창의행정상 수상자에게 상장 및 포상금 등의 부상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상장 및 부상 수여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
> 제8조(실비보상) 시장은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 제14조(학습활동의 지원) 시장은 공무원의 학습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에 따라 '22년까지 연 1회 서울창의상을 시상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조례 개정으로 시상횟수 증가 및 포상금 기준이 변경되어 비용추계에 포함
- 창의행정상 선정절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추계
- 공무원 학습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모호하여 市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해 왔으며, 조례 개정으로 근거규정이 신설되어 비용 추계에 포함

  ※ 24년 예산안 편성 기준으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지방세 수입	380,000	380,000	380,000	380,000	380,000	1,900,000
	소계(a)	380,000	380,000	380,000	380,000	380,000	1,900,000
세출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190,000	190,000	190,000	190,000	190,000	950,000
	창의행정 활성화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학습조직 운영 지원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소계(b)	380,000	380,000	380,000	380,000	380,000	1,900,000
□ 총 비용(a-b)		0	0	0	0	0	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시비	지방세수입	380,000	380,000	380,000	380,000	380,000	1,90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등	-	-	-	-	-	-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380,000	380,000	380,000	380,000	380,000	1,900,000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창의행정담당관 주무관 권빛나(☏ 02-2133-7767)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4년 예산 편성안 기준)

1.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 190,000천원

○ 창의제안상 포상금 = 145,000천원

○ 창의실행상 포상금 = 45,000천원

2. 창의행정 활성화 : 90,000천원

○ 창의행정 부서 활성화 지원 등 = 12,000천원

○ 상장 제작비 및 자료인쇄 등 = 6,800천원

○ 우수사례 홍보물 제작 = 30,000천원

○ 업무매뉴얼 제작 = 21,200천원

○ 창의행정 홍보 = 20,000천원

3. 학습조직 운영 지원 : 100,000천원

○ 학습조직 운영 지원 = 100,000천원